

석유유통구조 개선과

동자부는 최근 「석유유통구조개선안」의 확정

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오랫동안 미뤄온 유통구조개선안의 확정, 시행을 원칙대로 밀고 나갈 경우 『동자부가 정유회사라는 대기업편에 서서 중소기업인 주유소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2천8백여 주유소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그렇다고해서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즉, 이번에도 결정이 미뤄진다면 정유회사의 자율경쟁을 통한 석유의 품질향상과 가격인하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주유소에 거액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점을 동자부는 잘 알고 있다.

게다가 81년부터 9년 이상 주유소업 진출이 제한돼 왔던 정유회사들이 이제는 더이상 이러한 제한조치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이봉서 동자부장관마저 지난 임시국회에서 연말까지 석유유통구조개선안을 연구·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동자부는 연

일 관련 실무자들이 모여 연구토론을 거듭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지만, 정유회사와 주유소업자의 의견이 판이하게 다른데다 정유회사 내에서도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동자부가 석유 유통구조 개선에 골머리를 앓기 시작한 것은 지난 81년3월14일 이른바 「3·14조 정명령」이 발동되고나서 부터다. 『정유회사가 신규로 직접 주유소를 소유, 경영할 수 없다』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동자부 장관의 석유조정명령은 정유회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음에도 당시 5공초기의 서슬퍼런 분위기는 정유회사로 하여금 반발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물론 「소유」의 제한은 자유경제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기본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헌법위반’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동자부는 사실상 각종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정유회사의 주유소업 진출을 봉쇄해 왔다.

이처럼 정유회사의 주유소업 진출이 전면 금지되자 주유소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쉬운 영업을 하게 됐지만, 소비자는 피해를 보아야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석유유통구조가 주유소에게만 유



신 현 만
(한겨레신문 기자)

문제점

리하게 된 것이다.

현재의 석유유통구조가 주유소 위주로 돼있다는 것은 우선 제품표시제(Pole-Sign)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가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분명히 표시되고, 소비자는 그 제품표시를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표시제도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주유소는 1년 동안 정유회사와 계약, 계약회사의 제품만을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 회사의 제품이라도 조건에 맞으면 팔고있는 것이 현재의 판매관행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어느 회사의 제품을 쓰는지 알 수 없다. 정유회사의 품질경쟁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돼있는 셈이다.

또한 정유회사는 주유소를 직접 소유,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주유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즉 정유회사에 대한 선택권은 주유소에게 있으므로 주유소는 가만히 앉아 정유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판단, 가장 좋은 조건을 내놓는 정유회사와 거래하면 그만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정유회사는 주유소를 확보하는 것이 경영의 가장 큰 과제

가 되어 왔고, 품질, 가격경쟁은 관심 밖의 일이 되어 버렸다. 최근 일부 정유회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품질경쟁도 그런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주유소 난립과 과잉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유소 설립 제한조치로 인해 주유소 끼리의 경쟁마저 안되고 있어 주유소는 「가지고 있기만 하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어 버렸다. 주유소 설치 허가를 따내기 위해 몇년째 관청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유소에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는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주유소의 서비스 개선이 안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처럼 석유유통구조가 철저히 주유소 중심으로 짜져 있는데도 아직까지 유통구조 개선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석유의 유통구조왜곡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유통구조문제는 정유회사와 주유소 사이에 누가 더 이익을 가져가느냐 하는 싸움일 뿐이지, 소비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온 것이 8년 이상 유통구조의 왜곡을

지속시킨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유통구조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그 피해는 곧바로 소비자에게 미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시장에서 나타난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며 소비자는 공급업자의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와 품질향상의 이익을 맛본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을 우리나라의 석유소비자들은 맛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제품표시제의 미정착과 3·14조정명령에 의한 정유회사의 주유소 참여금지, 주유소설치 제한 등으로 인해 정유회사들은 품질경쟁에는 비교적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품질을 높여봐야 주유소가 제품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알아줄 턱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정유회사끼리의 가격경쟁에서 발생한 이익은 주유소가 사전에 먹어치워 소비자에게는 돌아갈 틈이 없다. 정유회사는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설비투자비와 ▲많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무이자 또는 장기저리의 운영비를 융자해주고 있으며, 대리점과 주유소에게 주는 이종의 이윤 외에 제품가격의 할인혜택

동자부는 이러한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몇년째 개선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유소설치조건을 조금씩 완화하고 제품표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정유회사와 주유소의 불공정거래도 적발해 왔다.

까지 제공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에게로 돌아가야 할 정유회사의 가격인하분이 고스란히 주유소에게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주유소끼리도 경쟁을 통해 정유회사의 가격인하분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주유소는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 설치 제한등 앞서 밝힌 여러 조건들로 인해 주유소끼리의 완전한 자율경쟁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유회사의 가격·품질경쟁에 따른 혜택을 소비자가 누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동자부는 이러한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몇년째 개선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유소설치 조건을 조금씩 완화하고 제품표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정유회사와 주유소의 불공정거래도 적발해왔다.

동자부는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석유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3·14조 정명명폐지를 통한 정유회사의 주유소업 참여 ▲제품표시제의 의무화 ▲주유소설치의 신고제 등 근본적인 석유유통구조개선안을 마련 시행하려 했다.

정유회사의 주유소업 진출을 통해

석유생산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함으로써 정유회사의 가격인하와 품질향상 혜택이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제품표시제를 의무화해 정유회사끼리의 품질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유소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주유소끼리도 경쟁하도록 만들어 소비자로 하여금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동자부는 이 세가지 개선안이 시행된다면 주유소에 붙는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주유소의 고객서비스도 나아지는 등 주유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유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동자부의 이러한 개선안은 주유소업계의 반발과 정유회사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번번히 무산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로 개선안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주유소업계는 동자부의 석유유통구조개선안이 정유회사에게만 이익이 되거나 중소기업의 경영을 악화시켜 결국 정유회사가 석유유통 시장을 독식하게 해주는 결과만 낳을 뿐, 유통구조개선의 효과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즉, 현재의 주유소는 일부 대형주유소를 제외한 대부분이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영세업자여서 정유회사가 대자본을 투입, 직접판매에 나설 경우, 기존 주유소는 존립기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상당수의 주유소들이 정유회사의 수중에 넘어가 있거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유회사의 주유소진출 허용은 급속도로 정유회사로 하여금 석유유통시장 잠식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주유소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주유소업계는 또한 현재의 상태로도 정유회사끼리의 가격·품질경쟁은 가능하며, 정유회사가 경쟁을 안하는 것은 해 봐야 제살을 깎는 것이어서 이익이 없을 뿐더러 정부의 석유정책 자체가 자율시장정책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유회사의 자율시장경쟁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유회사들은 그러나 이같은 주유소업계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선 현재의 주유소를 과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땅값만해도 몇십억원이 들어가야 하고 수익도 연간 억대는 물론 수십억원이 남는 곳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중소기업이나는 주장이다.

정유회사들은 또 현재의 유통구조

정유회사들은 현재의 유통구조로는 정유회사와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유통구조개선안의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산업자의 유통시장개입금지로 석유유통구조가 왜곡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로는 정유회사와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유통구조개선안의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생산업자가 유통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석유는 권장은 커녕, 금지해 놓고 있으니 유통구조가 왜곡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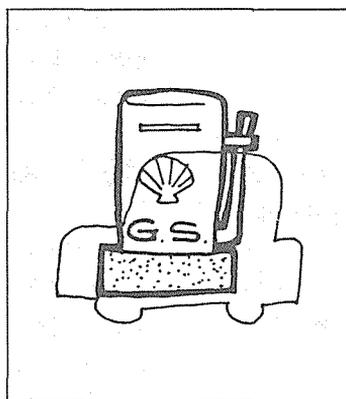
정유회사들은 동자부가 벌써 몇년째 유통구조개선안의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지방유지인 2천8백여개의 주유소업자들의 반발에 놀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결정을 미룰 경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자부는 이처럼 정유회사와 주유소업자들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양쪽을 오가며 질충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양쪽 입장이 계속 대립될 경우를 대비, 잠정적인 결정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동자부는 우선 3·14조정명령의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채 주유소업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유회사내의 이견조정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유공, 호남정유 등 선발정유사와 극동정유, 경인에너지, 쌍용정유 등 후발정유사들은 각각

폴사인제의 의무화와 주유소설치 자유화, 3·14조정명령 폐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자부는 주유소 설치가 힘든 만큼 정유회사의 이견조정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자부는 3·14조정명령 폐지에 따른 정유회사의 급격한 유통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우선 1차적으로 전체 주유소의 30%선까지 만을 정



유회사가 소유,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자부는 이와 함께 주유소 설치 조건을 좀더 완화하는 한편 제품표시제를 다음번 석유사업법을 개정할 때 입법화한다는 방침하에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동자부의 방침에 대해 주유소업계가 벌써부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정유회사 사이에서도

▲3·14조정명령 폐지 이전에 현재 주유소를 소유, 경영하고 있는 정유회사의 처리문제 ▲주유소 설치 자유화의 시행시기문제 ▲제품표시제의 기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동자부가 과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동자부가 벌써 몇년째 이러한 방침은 밝혔면서도 시행에 실패했던 점들을 고려할 때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동자부의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현재 실무자들 사이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유소업자들이 우려하는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주유소업자들의 반발도 훨씬 줄어들고 있다』며 『문제는 오히려 정유회사 사이의 이견조정이 아니겠냐』고 말하고 있다. ♣